

연혁

- 1992. 04. 17. 창립발기인 총회
- 1992. 04. 20. 보건사회부에 설립인가 신청
- 1992. 04. 22. 보건사회부로부터 법인 설립인가(제70호)  
- 권경곤 초대 이사장 취임
- 1994. 04. 08. 제2대(~3대) 민관식 이사장 취임
- 1998. 02. 28. 주무관청이 식약청으로 변경
- 2001. 01. 비영리민간단체 등록
- 2001. 04. 20. 김명섭 박사, 제4대(~6대) 이사장 취임
- 2002. 05. 16. 당산동 회관 입주 및 송천재활센터 개원  
-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238, 5층 건물
- 2002. 12. 26. 법정단체화(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)
- 2003. 04. 07. 재정경제부령에 따른 공익성기부단체 지정
- 2010. 04. 22. 제7대(~8대) 문희 이사장 취임
- 2014. 03. 11. 제9대 전영구 이사장 취임

설립근거

-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의2(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)

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의2】

-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.<개정 2013.3.23.>
  - 1.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·계몽 및 교육사업
  - 2.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
  - 3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·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
-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.
-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18. >
-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